

재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재정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기획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룩하는 데 있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총회 공천 12인(여성 1인 이상), 총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조로 한다.

제4조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제5조 (회집)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회의를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로 소집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2. 예비비의 사용과 항목 조정 및 변경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3. 총회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 총회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총회 임금세칙(내규)을 개정,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결의)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